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k㎡)	비 고
합 계			108.8	
영해기선 기점 (12)	홍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	0.1	
	하백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	4.6	
	거문도			
	여서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4.1	
	사수도 (장수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예초리	6.1	
	가거도 (소흑산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9.7	
	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6.6	
	고서			
	횡도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0.6	
	상왕등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0.5	
	직도 (소피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0.2	
	어청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1	
서해5도 (5)	백령도	인천 옹진군 백령면	51.2	
	대청도	인천 옹진군 대청면	15.6	
	소청도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연평면	7.4	
	소연평도			

2.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 국토부 홈페이지 고시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고시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